

의안번호	제179호
의결 연월일	2015년 6월 일 (제340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연월일 : 2015년 6월 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부시책 추진 인력과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 한시정원(3급)의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06명 → 3,282명 (+76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41명 → 1,556명 (+15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552명 → 1,613명 (+61명)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14명 (2~3급 +1명, 5급이하 +13명)
  - 연구직 : 연구사 +1명
  - 소방직 : +61명 (소방령이하 +61명)
- 한시정원(3급) 기한연장
  - 2015년 6월 30일 → 2016년 6월 30일 (1년)

※ 충청북도조례 제3497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제2조) 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06명“을 ”3,2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41명”을 “1,556명”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552명”을 “1,6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97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82</b>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b>1,437</b>	-				
1~2급	1					1
2~3급	<b>2</b>	<b>1</b>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6</b>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b>151</b>	-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b>124</b>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6			6		
지도사	19	-				
소방직 계	<b>1,613</b>	-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99</b>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206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541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552명</u>                  3. ~ 4.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th> <th>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b>3,206</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b>1,42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10</td> <td>8</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67</td> <td>42</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td> <td><b>1,32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b>150</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27</td> <td>1</td> <td></td> <td>24</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td> <td><b>1,552</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정</td> <td></td> <td>14</td> <td>3</td> <td></td> <td>11</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td> <td><b>1,538</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06</b>						일반직계		<b>1,423</b>						1~2급		1					1	2~3급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23</b>						전문경력관 소계		19						연구직계		<b>150</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3						소방직계		<b>1,552</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38</b>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282명</u>-----                  -----                  1. ----- <u>1,556명</u>                  2. -----                  ----- <u>1,613명</u>                  3.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th> <th>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b>3,282</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b>1,43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10</td> <td>8</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67</td> <td>42</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td> <td><b>1,336</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b>15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27</td> <td>1</td> <td></td> <td>24</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1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td> <td><b>1,61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정</td> <td></td> <td>14</td> <td>3</td> <td></td> <td>11</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td> <td><b>1,59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82</b>						일반직계		<b>1,437</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6</b>						전문경력관 소계		19						연구직계		<b>151</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4						소방직계		<b>1,613</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99</b>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06</b>																																																																																																																																																																																																																																																															
일반직계		<b>1,423</b>																																																																																																																																																																																																																																																															
1~2급		1					1																																																																																																																																																																																																																																																										
2~3급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23</b>																																																																																																																																																																																																																																																															
전문경력관 소계		19																																																																																																																																																																																																																																																															
연구직계		<b>150</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3																																																																																																																																																																																																																																																															
소방직계		<b>1,552</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38</b>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b>3,282</b>																																																																																																																																																																																																																																																															
일반직계		<b>1,437</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6</b>																																																																																																																																																																																																																																																															
전문경력관 소계		19																																																																																																																																																																																																																																																															
연구직계		<b>151</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4																																																																																																																																																																																																																																																															
소방직계		<b>1,613</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99</b>																																																																																																																																																																																																																																																															
<p>부 칙(2012. 8. 31 조례 제3497호) 제2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명(3급 1, 4급 1, 5급 2)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본청의 정원 중 1명(3급)의 존속기한은 <u>2015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p>	<p>부 칙(2012. 8. 31 조례 제3497호) 제2조(한시정원) -----                  -----                  -----                  -----                  ----- <u>2016년 6월 30일</u>-----                  -----</p>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정부시책 추진 인력과 소방 현장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
  - 정원의 총수 조정 : 3,206명 → 3,282명 (+76명)

##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2조
  -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8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56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3명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나. 추계의 전제 : 증원 +76명 (일반직14명, 연구직1명, 소방직61명)
- 다. 추 계 결 과 : ' 15년 하반기 인건비 2,098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 년도별 기준인건비 별도산정 통보 (매년 12월말, 행자부)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 출	20,371,260	2,098,831	4,380,662	4,503,320	4,629,412	4,759,035
공무원 인건비	20,371,260	2,098,831	4,380,662	4,503,320	4,629,412	4,759,035

※ 매년 임금인상률 2.8%(예상치) 적용 계산

## 6. 작성자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성업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